

서울외곽순환(일산~퇴계원)고속도로
민간투자시설사업

3차 변경 실시협약



2011년 5월 30일

국 토 해 양 부
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



서울외곽순환 (일산-퇴계원)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3차 변경실시협약

대한민국 국토해양부(이하 “주무관청”이라 한다)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(이하 “사업시행자”라 한다)는 서울외곽순환 (일산-퇴계원)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출자자 변경 및 자금제조달 등과 관련하여, 2000년 12월 14일자 「서울외곽순환 (일산-퇴계원)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」, 2004년 6월 23일자 「서울외곽순환 (일산-퇴계원)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변경실시협약」 및 2007년 12월 26일자 「서울외곽순환 (일산-퇴계원)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2차 실시협약 변경」(이하 총칭하여 “실시협약”이라 한다)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기로 하여, 다음과 같이 2011년 5월 30일에 3차 변경실시협약(이하 “변경실시협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제 1 조 정 의

이 변경실시협약에서 별리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들은 실시협약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. 실시협약에서 “건설교통부”로 기재된 사항은 모두 “국토해양부”로 변경된다.

제 2 조 출자자 변경 및 자금제조달

(1) 실시협약 제3조의 2(출자자 및 출자지분율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“제3조의 2(출자자 및 출자지분율)”

실시협약 부록1의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출자자 및 지분율은 부록 1에 기재된 바와 같다.

(2) 사업시행자는 제(1)항에 정한 출자자 및 출자지분율로의 변경과 관련한 자금차입계약 및 자본구조변경으로 인한 자금재조달 (이하 "1차 자금재조달"이라 한다) 이후에는 자본금을 2010년말 기준으로 110,871백만원으로 유지하기로 하며 1차 자금재조달 이후에 이루어지는 자금재조달에 따른 자본금은 그 당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3 조 사업수익률

실시협약 제39조(사업수익률)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“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세후 실질수익률을 의미하여 8.51%로 한다.”

제 4 조 통행료

협약당사자들은 실시협약 체결일로부터 이 변경실시협약의 체결일까지의 기간동안 변경된 법인세율, 출자자, 출자지분 현황, 환수통행료수입의 통행료 인하 반영조치, 1차 자금재조달과 관련된 자금재차입 효과를 모두 반영하여 본 사업의 전체 구간에 무상사용 기간 동안 적용할 실시협약 제41조(통행료)의 구간별 통행료를 부록6과 같이 변경한다.

제 5 조 부록의 변경

실시협약의 부록1, 부록6, 부록7, 부록8, 부록9, 부록12는 이 변경 실시협약에 첨부된 부록1, 부록6, 부록7, 부록8, 부록9, 부록12로 각 변경되며, 실시협약상 해당 부록에 대한 언급은 이 변경실시협약에 의해 변경된 부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.

제 6 조 기존 실시협약의 효력

기존 실시협약의 내용 중 이 변경실시협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사항은 이 변경실시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그 효력이 상실되며 이 변경실시협약의 내용대로 변경된다. 다만, 이 변경실시협약 체결일 현재 변경 전 실시협약에 따라 발생한 협약당사자간의 권리·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제 7 조 이 변경실시협약의 효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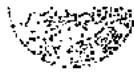
이 변경실시협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

(서명란은 다음 장에)



이 변경실시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 당사자는 아래 기재
일자에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 및 날인한 후 각 1부씩
보관한다.

2011년 5월 30일



대한민국

국토해양부장관 정



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

대표이사 구분국

